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영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76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8.

발의자 : 윤영석 · 서천호 · 박상웅

임종득 · 김태호 · 김소희

박대출 · 이달희 · 우재준

안상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도권과 밀역 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 등을 해당 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범인세 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, 해당 제도는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 기능과 인구를 분산시키고,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바 있음.

본점이나 주사무소 이전은 단순한 건물 이동을 넘어 기업의 조직 재편, 인력 이동, 새로운 환경 적응 등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며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경영 여건은 기업들이 이러한 대규모 이전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현행 특례 기한인 2025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세제 혜택을 받기에는 물리적으로 촉박한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.

따라서 수도권 본점의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,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 이는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으로의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됨(안 제61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제3항 전단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 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 입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
④ ~ ⑥ (생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